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26. 김기표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8. 27.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11.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김기표의원)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소위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